



서울 행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9883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

피 고 1. ○○특별시 ○○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주○○

2. ○○광역시 ○○○구청장

소송대리인 ○○○○공단

담당변호사 박○○

변 론 종 결 2025. 1. 17.

판 결 선 고 2025. 3.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특별시 ○○구청장이 2022. 9. 14. 한 취득세 6,670,322,41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피고 ○○광역시 ○○○구청장이 2022. 9. 15. 한 취득세 177,747,91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2. 3. B 주식회사(현재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대상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100%를 승계취득하였다.

나. 대상회사는 차량의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하면서, 리스기간이 종료된 이후 리스이용자가 리스차량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조건 또는 리스기간이 종료된 이후 리스이용자가 리스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 등으로 차량리스 계약을 운용하였고, 위와 같은 차량리스 계약을 금융리스로 보아 회계처리하였다.

다. 원고는 대상회사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면서, 대상회사 명의로 등록된 리스차량(이하 '이 사건 리스차량'이라 한다)이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대상이 된다는 전제 아래 2022. 3. 30. 이 사건 리스차량에 관한 금융리스 채권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피고 ○○특별시 ○○구청장에게 6,671,070,580원, 피고 ○○광역시 ○○○구청장에게 177,747,910원을 이 사건 리스차량에 관한 취득세 등으로 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2. 7. 25. 이 사건 리스차량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대상이 아니라며 피고 ○○특별시 ○○구청장에게 취득세 6,670,322,410원, 피고 ○○광역시 ○○○구청



장에게 취득세 177,747,910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각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 ○○특별시 ○○구청장은 2022. 9. 14., 피고 ○○광역시 ○○○구청장은 2022. 9. 15. 원고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리스차량은 리스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인 원고가 이 사건 리스차량을 임의로 처분하고 관리운용할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리스차량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판단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제도의 취지와 시설대여의 법률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리스차량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266 판결 참조).

② 그런데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한 차량(리스차량)을 그 명의로 등록한 경우에



그 차량은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시설대여업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¹⁾ 시설대여업자는 리스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되, 대여시설이용자(리스이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시설대여계약 등에 의한 제한을 받을 뿐이므로 그것만으로는 시설대여업자의 과점주주가 리스차량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시설대여업자는 리스차량을 직접 운용하지 않더라도 시설대여의 방식으로 관리운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시설대여업자의 과점주주는 시설대여업자를 통해 시설대여한 차량을 시설대여의 방식으로 관리운용할 지위에 있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차량의 처분권한도 시설대여계약 등에 의하여 제한될 뿐이다.

③ 원고는 시설대여계약에 있어 리스이용자가 실질적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구 지방세법 제7조 제9항, 제5항의 간주 규정을 중첩적으로 적용하여 리스차량에 관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를 인정하는 것은 과세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은 취득세는 차량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차량 등의 취득은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대상회사는 그 명의로 이 사건 리스차량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리스차량에 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리스이용자가 리스차량의 대금 지급까지 모두 이행하여 그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시설

1) 대법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40025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7다244139 판결 등 참조)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소유권조차 시설대여업자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대여업자에게 리스료 등을 지급하며 차량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리스이용자가 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9항은 '시설대여업자가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리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으로, 대상회사가 그 명의로 이 사건 리스차량을 취득한 이 사건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9항, 제5항의 간주 규정을 중첩적으로 적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④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0두3375 판결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세율은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고, 대법원 2010두8669 판결은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어느 주주가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대법원 2011두26046 판결, 대법원 2015두3591 판결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해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4-04

판사 조○○ 사무분담 변경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 나○○

판사 조○○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 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끝.